

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

의안 번호	8-81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확대하고, 친환경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

□ 관련조례

- 「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조례」 제4조(지원대상)

- ①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며, 지원 대상을 변경(단계별 확대)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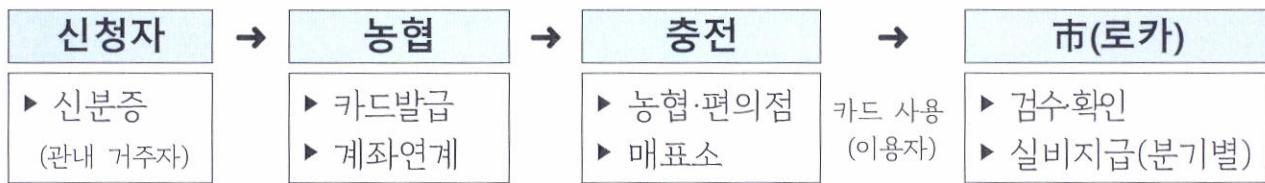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확대

구 분	기 존	확 대	비 고
대 상	기초연금수급자 (51,514명)	모든 어르신 (76,956명)	' 22.1.31.기준 안산시 통계
실인원	20,000명	30,000명	
예 산	2,000백만원 $20,000\text{명} \times 25,000\text{원} \times 2\text{분기}$	2,400백만원 $30,000\text{명} \times 20,000\text{원} \times 4\text{분기}$	

※ '21.3분기 ~ '22.1분기 분기별 (평균) 이용인원 16,000명 / 1인당 20,000원 이용

○ 추진절차



□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결과 : 협의완료 (동의)

□ 그 밖의 참고사항

- (붙임1) 관련조례 1부.
- (붙임2) 예산수반사항 1부.
- (붙임3) 관련사업계획서 1부.
- (붙임4)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결과 1부.

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

(제정) 2020.12.30 조례 제2484호

(일부개정) 2021.09.29 조례 제256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,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르신” 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2. “시내버스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
3. “무상교통”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(이하 “버스”라 한다)를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교통카드”란 어르신들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사업 제휴·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.
5. “교통비”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보전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
2.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

3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지원대상) ①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며, 지원 대상을 변경(단계별 확대)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방법) ①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·협약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,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(교통비 지원 등) ① 시장은 어르신에게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중단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2.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
3.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
4.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,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
3.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

-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또한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니, 대중교통과는 고령 인구 증가 속도 및 이용자 증가 추이를 면밀히 추적·관찰하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,
- 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사회보장제도 사업에 대한 국·도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